

## 국민연금 받는 나이, 70세로 올려야

 김원식 | 건국대 명예교수

지난주 발표된 '2022 OECD 한국경제보고서'는 고령화에 따른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연금 수급 연령을 2034년까지 68세로 높일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현실은 OECD 생각보다 심각하다.

국민연금이 보험료율이나 연금 수급액 등 제도적 문제뿐 아니라 출산율, 연금기금 수익률, 물가상승률 등 통제가 불가능한 외생적 요인으로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0.81로 세계 최하위였던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올해 2분기에는 0.75로 더 하락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국민연금기금은 국내와 해외 주식 수익률이 각각 마이너스 19%와 마이너스 12%로 하락하면서 기금 규모가 8%나 감소하였다.

국민연금 급여는 전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되는데 올해 2.2%가 인상되었으나 내년에는 인상이 2배 이상 될 전망이다. 또 불경기로 인한 소득 감소로 보험료 수입도 크게 줄 것이다. 이러한 요소는 지금 이 시각에도 국민연금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는 MZ세대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연금 개혁 요구로 이어질 것이다.

제도 도입 이후 네 차례에 걸친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과 관련된 개혁 논의는 거의 모두 재정 안정을 위한 보험료율 인상이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급여 인상에 집중하며 합의될 수 없는 정치 소에 그쳤다. 앞으로 구성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설령 국민적 합의로 보험료 인상이나 급여 인가가 결정된다고 해도 정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재정 안정을 위한 큰 폭의 보험료 인상은 근로자들의 근로 유인을 억제해 국민 경제에 부담이 된다.

보험료율을 두 배로 올려서 18%가 된다면 생활비가 크게 줄어 보험료의 성실한 납부도 기대하기 힘들다. 국민연금 개혁은 노동시장과 국민 경제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평균수명이 수직 상승한 초고령사회에서 연금 수급 기간을 무작정 늘어나게 할 수는 없다. 제도가 도입된 1988년에는 평균수명이 70.7세여서 현재의 목표 수급 연령 65세 기준으로 5년 반만 연금을 지급하면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평균수명이 84.1세니까 4배가 넘는 19년 동안 지급해야 한다. 게다가 청년들의 첫 취업 연령도 평균 30세로 계속 늘어 보험료 납입 기간은 감소해 왔다.

국민연금 위기를 불러올 외생적 요인을 고려할 때 연금 수급 연령을 먼저 상향 조정해야 한다. 준비 및 조정 기간을 단축하여 2025년부터 1년씩 연금 수급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면 5년 후인 2030년에는 연간 4분의 1 이상의 급여 지출을 줄일 수 있다.

연금 수급 연령의 상향 조정으로 퇴직 후 연금 수급을 더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65세 연금 수령을 기대했던 60대 전후 가입자들의 반발이 가장 클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와 함께 노동인구도 감소하고 있다. 이제는 고령 근로자들을 통하여 부족한 노동력을 메꾸어 경제 선순환을 유도해야 한다.

정년 연장뿐 아니라 건강하고 일하기 원하는 고령자들을 위한 정년 폐지, 노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성과급제도를 병행 도입해야 한다. 중·고령 근로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을 통하여 사전적으로 근로 기간에 직업훈련의 강화 혹은 고령 친화적 직업으로의 전직훈련 등으로 대비하게 해야 한다.

아울러 연금 수급 연령에 이르기 전까지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제도의 역할도 제고해야 한다. 청년들이 연금 수급 연령 상향을 반대할 수도 있으나, 현실적 MZ세대는 보험료를 더 내는 대안과 비교하여 당연히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이다.

고령자들의 시장 참여 확대가 청년들에게는 생산성을 높여 임금 상승의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노인 고용과 청년 고용은 대체적이 아닌 보완적 관계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개혁은 반드시 노동시장 정책 조정이나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자본시장에 대해 치밀한 정책 조정이 따라야 혼선이 없다. 세금으로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보건복지부가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연금 개혁 문제를 정책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소관 부처를 기획재정부로 이전하는 지배구조 혁신도 함께해야 한다.

출처:중앙일보 오피니언 기고\_김원식 건국대 명예교수



국토교통부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가 확대됩니다**

- 청년(최대 2억원)·신혼부부(최대 3억원)··· 금리부담 완화도 함께 시행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7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보증기금의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한도를 10월 4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그동안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7천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던 것을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하였다.
  -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한도 역시 수도권 2억원, 지방 1.6억원에서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으로 인상하고 대출대상이 되는 주택의 보증금 상한도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구분	청년		신혼부부			
	기존	변경	수도권		지방	
			기존	변경	기존	변경
대출한도	0.7억	2억	2억	3억	1.6억	2억
보증금 상한	1억	3억	3억	4억	2억	3억

- 결혼 전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다 결혼 후 대출한도가 더 유리\*한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손쉽게 옮겨갈 수 있도록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도 새롭게 도입된다.
  - \* 미혼 단독세대주 대출한도는 1.5억, 신혼부부는 2.7억
  - 그동안 결혼 전에 기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던 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가 결혼 후 더 큰 주택을 구입해 이사하려면, 기존 대출을 전부 상환해야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다.
  - 그러나, 10월 4일 도입되는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을 통하면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곧바로 신청할 수 있어 기존의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0.2%p의 금리우대 혜택도 추가로 받게 된다.
- 아울러, 최근 급등하는 금리로 인한 디딤돌 대출(구입자금) 이용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10월 21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 \* 「고물가 부담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22.7.7 발표)」 및 「새 정부 국토교통부 업무보고(‘22.7.18 발표)」
  - 디딤돌 대출 이용자가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금리변동 위험에 대비하도록 하고, 현재의 원리금 상환방식\*을 중도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 현재는 대출신청 시 상환방식(●원리금균등, ●원금균등, ●체증식) 선택 후 만기 시까지 유지
    - \*\* 1억 대출 시(잔여만기 10년, 금리 3%) 상환방식에 따라 원금균등(1.10백만원) > 원리금균등(0.95백만원) > 체증상환(0.28백만원) 순으로 월 지출액 감소 (초기 6개월 평균)
-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기금 누리집(www.nhuf.molit.go.kr) 또는 기금e튼튼 누리집(www.enhuf.molit.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에 최신 기상 정보를 반영하여 강풍·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최소화**

- 농식품부, 2023년 ‘사회적농업 활성화지원사업’ 공모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온실(시설하우스)·인삼 해가림재배시설의 강풍·폭설 등 자연재해 대비를 강화하기 위해 2022년 9월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규정」(이하 내재해 기준 고시)을 개정하였다.
- 농식품부는 폭설과 강풍으로 온실과 인삼 시설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국가 및 농업인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내재해 기준 고시를 제정하였다. 내재해 기준 고시에는 지역별 내재해 설계 강도 기준(풍속, 적설심)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심사, 등록, 공시와 관련된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 농식품부는 이번 내재해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최근 기상 상황에 맞게 내재해 설계 강도 기준을 조정하는 한편,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심사 절차를 보완하여 제도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설계기준의 경우 지난 2014년에 설정된 적설심 및 풍속에 대한 내재해 설계기준을 최근 30년 기상 자료를 반영하여 재설정하였다. 영덕 지역 내 재해 설계 적설 기준값을 기존 34cm에서 40cm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20개 지역 적설 기준을 변경하였으며, 내재해 설계 풍속 기준도 33개 지역에 대해 2m/s 상향 조정하여 기상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심사 절차 및 기술검토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심사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였다.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과 관련된 반려·보류·재심사·이의신청 처리 절차를 구체화하였고, 등록신청 규격의 기술검토 조항을 신설하여 외부 전문가를 통한 검토 절차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의 제척·회피 조항도 추가하였다.
- 농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내재해 기준 고시 개정은 매년 거세지는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 대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신속하는 온실과 특작 시설은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개정된 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행정안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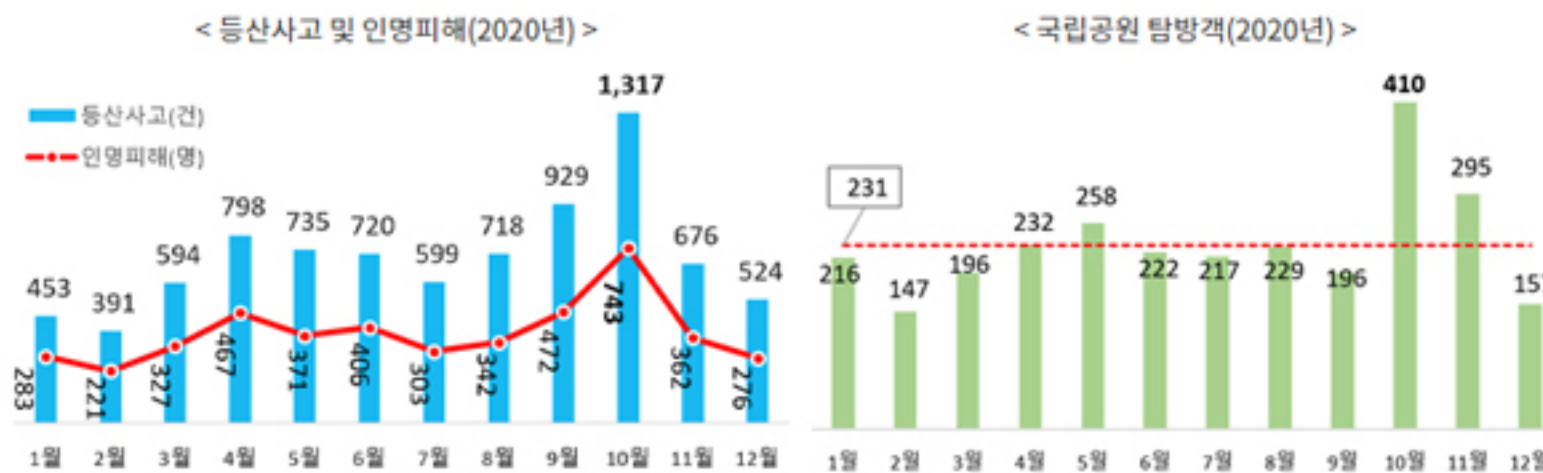
가을 단풍 시작, 등산 사고에 주의하세요!

- 산행 시 발밑 조심, 지정 등산로 이용, 해지기 전 여유로운 하산 -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단풍철을 맞아 산행 시 실족·추락, 조난 등 등산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 10월은 야외활동하기 좋은 청명한 날씨와 단풍 구경 등으로 산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등산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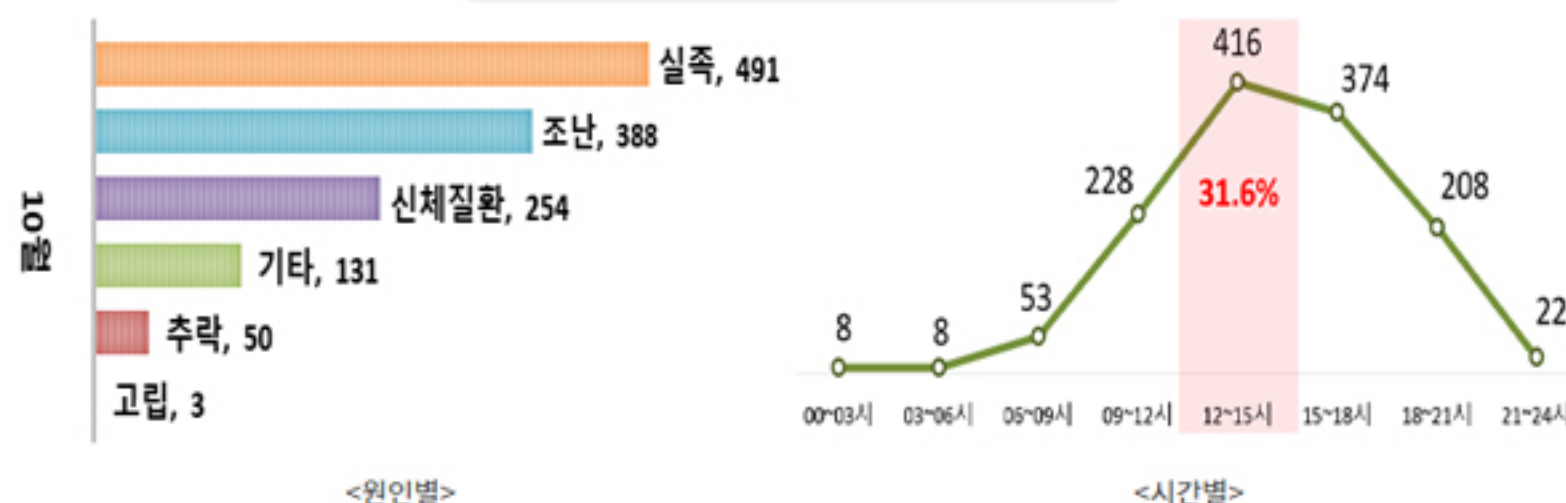
구분	설악산	북한산	계룡산	내장산	한리산
첫 단풍 시기 예상	09.28	10.17	10.18.	10.24	10.18.
단풍 절정 시기 예상	10.19	10.31	11.01	11.07	11.02

- 최근 5년('16~'20)간 발생한 등산 사고는 총 35,185건이며, 이 중 2020년에는 8,454건으로 4,573명의 인명피해(사망 또는 부상)가 발생하였다.
  - \* 연도별 등산사고(건) '16년 7,472, '17년 6,767, '18년 7,097, '19년 5,395, '20년 8,454
- 특히, 10월에는 연중 가장 많은 1,317건의 등산사고로 총 743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으며 이 중 16명이 사망하였다.



- 10월 한 달간 전국 각지에서 국립공원을 다녀간 탐방객은 월평균인 231만 명보다 1.8배 많은 410만명으로 집계되었다.
  - \* 국립공원 산 기준(제외: 한려해상, 태안해안, 다도해 해상, 변산반도)
- 등산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서는 발을 헛디디며 발생하는 실족 사고가 491건(37%)으로 가장 많고, 길을 잃고 헤매는 조난 사고 388건(29%), 지병 등 신체질환으로 인한 사고 254건(19%) 순으로 발생하였다.
- 시간대별로는 등산이 어느 정도 진행된 점심시간 이후인 12시에서 15시 사이에 31.6%(416건)가 발생하였고, 해가 지고 어두지는 18시 이후의 사고도 17%(230건)나 차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10월 등산사고 원인별·시간대별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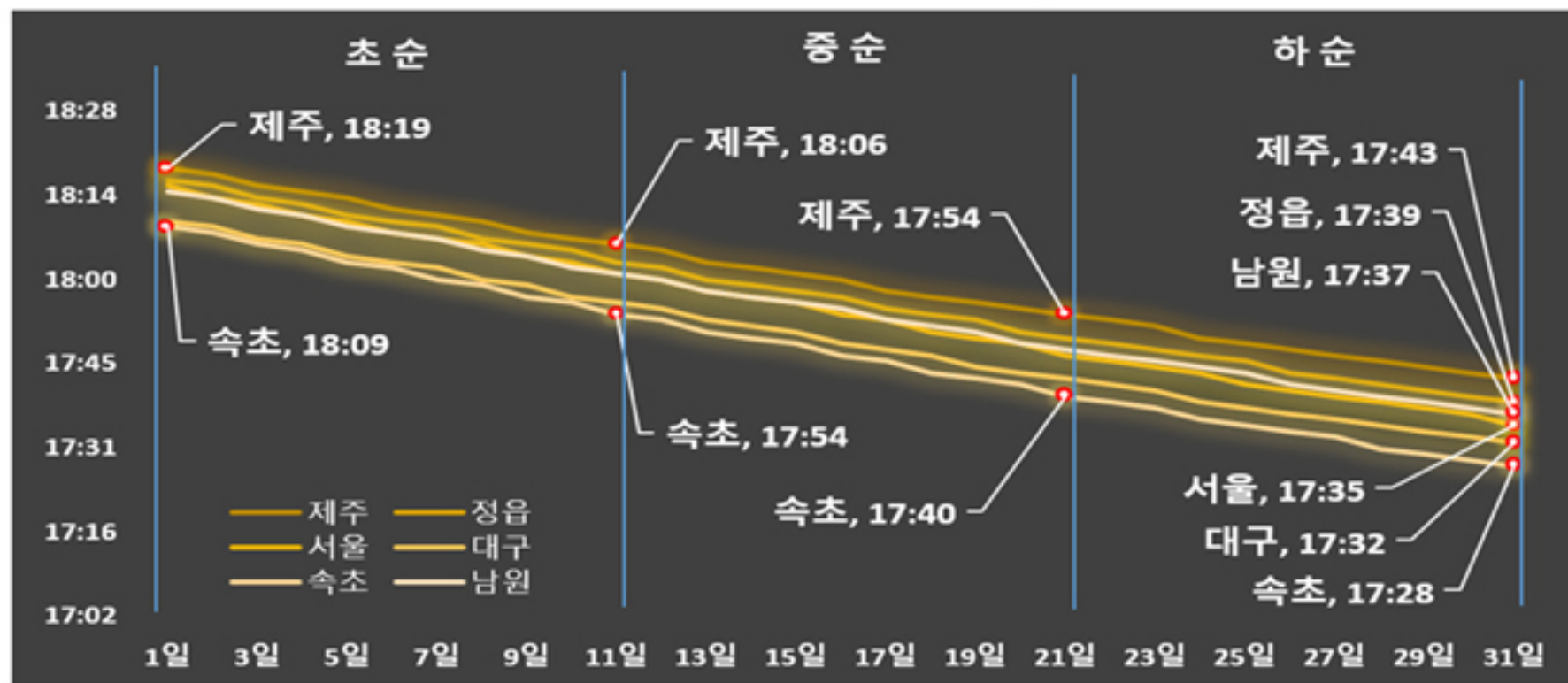




□ 가을철 등산 사고를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 산행을 나서기 전에는 등산로와 산행 소요시간, 대피소, 산악날씨 등의 산행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출발하도록 한다.
  - 산행정보 확인: 생활안전지도(앱, 웹)→생활→산행안전지도(국립공원)
- 산행은 가벼운 몸풀기로 시작하여 자신의 체력에 맞는 등산로를 선택하고, 산행 중이라도 몸에 무리가 오면 즉시 하산하도록 한다.
- 산행은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입산이 통제된 위험·금지구역은 절대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 또한, 가벼운 타박상이나 굶힘 등 사고에 대비하여 반창고, 붕대 등이 들어있는 간단한 구급약을 챙기고, 유사시 먹을 수 있는 비상식량도 챙겨가도록 한다.
- 한로(10.8.)와 상강(10.23.)을 지나며 풀숲에 이슬이 맺히고, 서리까지 내리면 등산로가 생각보다 미끄러울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 (한로)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시기 (상강)서리가 내리는 시기
- 추분(9.23.)을 지나며 낮의 길이가 점점 줄어들고, 특히 산에서는 생각보다 빨리 어두워져 조난 등 사고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 산행은 아침 일찍 시작해서 해가 지기 한두 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 10월 주요 도시별 일몰 시간 •



- 또한,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 헤매지 말고 왔던 길을 따라 아는 곳까지 되돌아오도록 한다.
  - 조난 등 사고 시에는 등산로에 설치된 다목적 위치표지판을 활용하여 신고

- 아울러, 갑자기 기온이 낮아지거나 찬 바람이 불 때 덧입을 수 있는 여벌의 옷과 장갑 등을 챙겨 추위에 대비하여야 한다.

□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가을 단풍철을 맞아 산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집 근처의 가까운 야산을 가더라도 꼭 주변에 행선지를 알리고,”

- “특히, 요즘에는 해가 지는 시간이 점점 빨라지고 있어서 자칫 산에서 녹장을 부리다 늦어지면 위험하니, 평소보다 하산을 서둘러 안전한 산행이 되길 바란다.”라고 하였다.



#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도입과 지방의회의 역할

이 상 범 |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

## I. 도입배경

- 고향사랑기부금제는 고향에 대한 의미 부여를 통한 기부문화의 장려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 하기 위해 도입됨
  - 특히, 수도권으로 인구유출과 그로 인한 지역경제 악화 그리고 지역활력의 저하라는 악순환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돌파구로써 모색됨
-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시 재정 분권 과제의 일환으로 (가칭) 「고향사랑 기부제법」 시행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됨
- 이후 2021년 10월 제21대 국회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사랑기부금법)』을 제정하여 2023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 II.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구조

- 고향사랑기부금제도는 기부자(국민),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 해당 지역주민, 지방의회, 답례품 생산자, 중앙정부 등이 그 작동에 있어 상호작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 기부자는 본인의 주소지 외의 전국 모든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에 기부가 가능하며, 법인은 기부가 불가함
  -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모집·홍보·운영 및 사업추진을 함. 단, 기부강요 및 모금방법 위반 시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음
  - 지방의회는 기부금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현안문제 해결과 지역균형발전의 효과누적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함
  - 해당 지역주민은 고향사랑기부금제에 관심을 갖고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 호응해야 함
  - 답례품 생산자는 답례품 개발과 품질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함. 특히 품질유지는 기부유인의 중요한 요소가 됨
  - 중앙정부는 고향사랑기부금제의 관리 및 제도적 조정과 지역경제 활력의 취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해야 함
- 고향사랑기부금제도는 정치자금기부금제와 지역사랑상품권제(답례품)가 합쳐진 독특한 제도임
  - 정치자금법에 따라 기부금 10만 원은 소득세 신고 시 10만 원을 공제받는데 고향사랑기부금제도 역시 10만 원을 돌려받음
  - 추가로 지방정부가 3만 원 이하의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어 기부자는 최대 13만 원을 돌려받는 효과가 있음
  - 즉, 답례품은 기부액의 30%까지 제공할 수 있고 세액공제는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공제함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 개인 기부금의 연간한도액은 5백만 원이고 지방자치단체 모금한도액은 규정하지 않음

## III. 일본 고향납세 제도의 활성화 사례

-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금제는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를 벤치마킹한 제도이므로 일본의 활성화 요인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음
- 첫째, 재난재해에 대한 기부금의 증가임. 일본 고향세의 기부금 증가를 보면, 2011년의 동일본 재해에 따라 기부금액이 대폭 증가함
  - 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 시군정촌)에 대하여 기부한 금액은 2008년 8,139백 만엔, 2010년 10,217백 만엔 이었으나, 2011년 동일본 재해 때 12,162백 만엔으로 크게 증가
- 둘째,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및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임. 2015년 고향납세 공제액의 2배 확대 및 원스톱 특례제도를 시행하는 등 제도적 개선에 따라 크게 증가
  - 2014년 기부금액은 38,852백 만엔에서 165,291백 만엔으로 대폭 증가
  - 2020년 기준 기부 건수는 3,488만 건, 납세금액은 672,490백 만엔 임

<표 1> 일본 고향납세 제도 경과

연도	주요내용
2008	고향세 납세제도 도입
2009	홋카이도(北海道)에서 최초 실시
2011	동일본 재해에 따른 기부금 증가



----	납세자 자비부담금을 5,000엔에서 2,000엔으로 인하
2015	고향세 특례공제 상한액을 주민세 소득할액의 10%에서 20%로 인상
	고향납세 원스톱 특례제도 도입: 정기급여자의 확정신고서 제출 생략
2016	지방창생응원세제 도입(기업판 고향납세)
2019	고향납세 지정제도 신설: 고향납세 지정기준 및 지방세법 상 지정기준 신설

- 셋째, 답례품 제공에 따른 기부금액 증가임. 고향납세의 증가 요인에 대한 2017년 일본 총무성(2018)의 지자체 (총 1,788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도답례품의 충실' 1,021단체(57.1%), '고향납세의 보급·정착' 1,020단체(57.0%), '세수납부환경의 정비(신용카드 납부, 전자신청)' 747단체(41.8%) 등의 응답을 보임
  - 이중 '답례품 충실'의 답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일본 고향납세의 증가요인으로 기부금에 대한 반대급부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시사함

• <표 1> 일본 고향납세 제도 경과 •

고향세 증가 이유	2016	2017
답례품의 충실	1,017지자체(56.9%)	1,021지자체(57.1%)
고향세의 보급, 정착	999지자체(55.9%)	1,020지자체(57.0%)
세수납부환경의 정비 (신용카드납부, 전자신청)	766지자체(42.8%)	747지자체(41.8%)
홈페이지 등 홍보의 충실	588지자체(32.9%)	580지자체(32.4%)
납세자 친화적인 세수행정 (원스톱 특례 제도 등)	791지자체(44.2%)	538지자체(30.1%)
사용처, 사업내용의 충실	122지자체(6.8%)	169지자체(9.5%)
지진재해 지원	42지자체(2.3%)	90지자체(5%)

#### IV. 고향사랑기부금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 고향사랑기부금제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음
-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확한 조례 제정목표의 설정임
  - 예를 들면 고향사랑기부금의 모집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한 지역경제 침체를 회복할 수 있는 촉매제로서 조례제정 목표를 설정
  - 이러한 목표설정은 기부자에게 지급하는 답례품과 관련하여 지역 내 다양한 향토산업 또는 전통산업을 활성화시켜 내고장의 홍보 및 관광 등에 활용할 수 있음
- 둘째, 조례를 통한 투명한 사업운영 및 지역 현안사업 발굴·지원임
  - 고향사랑기부금제는 기부금에 대해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법 제11조)
  - 조례에는 기부금 운영 관리를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야 함. 즉, 지원사업 공개, 기부자에 대하여 사업의 추진 일정 경과보고, 사업성과보고 등 정보공개를 투명하게 해야 할 것임
  - 또한 활력있는 지역과 주민복리를 위한 지역현안 사업 발굴에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임. 예를 들면, 지역 내 1차산업이나 지역특산물의 생산·제조 물품의 유통·판로·마케팅사업, 지역 내 환경보전, 관광, 문화, 스포츠, 교류·연계사업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
- 셋째, 기금 재원에 대한 일반재정 지원에 대한 고려임
  - 고향사랑기부금은 결과적으로 제도의 취지와 무관하게 개인부담이 증가하는 구조
  - 지방정부의 사업실현을 위해 기부자의 기부에만 의존하는 것은 지방분권의 원칙에도 바람직하지 않음
  - 지역 현안사업들에 대해 모집된 기부금에 지방재정 매칭을 하게 되면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고 지방재정 재원확보에도 기여할 것임
  - 따라서 고향사랑기부금제의 활성화를 위해 일반재정의 지원도 필요하며, 이에 대한 지방의원의 철학과 추진 의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함

출처: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_이상범



알기쉬운 정책용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

고금리 사업자대출?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시행!

9월 30일부터 신청·접수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  
**저금리로.kr**






알기쉬운 정책용어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차주\***로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 중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차주
-  다만, 휴·폐업, 세금 체납, 대출연체 및 기타 부실우려 등으로 **대환 이후 대출상환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합니다.



코로나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보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



대상채무

-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로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지원합니다.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취지 등을 감안하여 **2022년 5월말까지 취급된 대출까지** 지원합니다.
 

2022년 5월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2022년 6월 이후 갱신된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성격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대상에서 제외**  
(예)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타론, 마이너스 통장





알기쉬운 정책용어

지원내용

- 사업자별로 **개인사업자는 5천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이며, 한도 내에서는 여러 건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습니다.
- 금리와 보증료는 최대 6.5%**로 실제로 적용받는 금리는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됩니다.
  - 금리는 1~2년차의 경우 최대 5.5%(2년간 고정금리), 3~5년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2.0%p)를 상한선으로 적용
  - 보증료는 연 1%(고정) 적용
- 금번 프로그램으로 상환되는 기존대출과 신규 대환대출은 금융권 협의 등을 거쳐 **모두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5년간 **2년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하는 구조이나,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만큼 **추가부담 없이 조기에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9월 30일(금)부터 14개 은행**의 모바일 앱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금리로.kr**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수협·부산·대구·광주·경남·전북·제주·토스 (SC은행·케이뱅크는 현재 참여 준비 중으로 추후 편입예정)
- 다만, **법인 소기업** 또는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등에는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만큼 **예외적으로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영업점이 없는 인터넷은행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만 신청가능(법인은 불가)

**9월 30일(금)부터 10월 28일 (금)까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9월 30일 ~ 10월 14일	공휴일	1·2·7	3·8	4·6·9	5·0
10월 17일 ~ 10월 28일	1·6	2·7	3·8	4·9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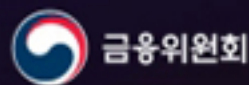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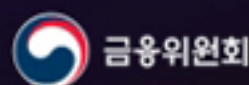
알기쉬운 정책용어

**궁금할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하세요!**

- ✓ 다른 대환 제도를 이용하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상공인 대환대출 금액은 본 프로그램 지원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 ✓ 대상기업 여부와 대환 가능한 고금리대출은 '온라인 안내 시스템(저금리로)' 또는 은행 모바일앱과 창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 이번 프로그램은 사업목적 대출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만큼 원칙적으로 개인대출은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목적 대출이 확인되는 건설기계·중장비 등 상용차 구입 관련 대출은 대환신청에 포함됩니다.
- ✓ 여러 개의 고금리 대출을 합산하여 1건의 대환대출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 고금리 대출의 일부 금액에 대해서도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예) 고금리대출 70백만원 ⇨ 대환대출로 50백만원 상환, 고금리대출 잔액 20백만원




- ✓ 대환 프로그램은 지원한도 여유액 범위내에서 추가 이용이 가능합니다.
- ✓ 여러 개의 사업체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사업체별로 합산하여 5천만원, 법인 사업체별로 합산하여 1억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 ✓ 제도의 운용기한은 2023년 12월 말까지이나, 총량한도(8조 5천억원) 소진 시 조기 종결될 수 있습니다.
- ✓ 준비 자료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표준재무제표 증명(법인, 최근2개년), 주민등록표등본(대표자 등),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법인), 임대차계약서 등이며, 제출 자료는 통상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했으면 유효합니다.  
각 은행별로 일부 서류 자체 수집이 가능하므로 미리 확인하시면 더 편리합니다.
- ✓ 대환보증 신청이 가능하다고 조회되더라도, 안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고객이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지원대상정보를 제공하는 만큼 신규 대출 기관 심사 과정에서 실제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알기쉬운 정책용어

  
**주의하세요!**

☑ **전화 상담 요구 및 문자 주의!**

- ▶ 정부, 공공기관 및 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알선 등을 통해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 대한 등 대출알선을 빙자한 자금이체 요청 및 개인정보 제공, 앱 설치 등은 **무조건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

☑ **피해금 송금시 바로 신고!**

- ▶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절대 터치하지 마시고, 피해금을 송금한 경우에는 사기범이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전화하여 신속히 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하는 것이 피해 예방에 가장 중요합니다.

 금융위원회

출처: 정책브리핑 카드뉴스